【논문】

칸트 윤리학의 맥락에서 본 최고선에 대한 논의들

강 지 영*

【주제 분류】 윤리학
【주요어】 최고선, 칸트, 윤리적 형식주의, 목적론
【요약문】 칸트의 최고선은 도덕성과 행복의 결합으로 규정된다. 최고선에는 행복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개념이 칸트 도덕철학의 핵심 개념들, 즉 도덕법의 형식성, 의지의 자율성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고선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칸트 실천철학에 중요하다. 우선 최고선은 도덕법칙이라는 형식적 명령에 "덕에 비례하는 행복", "도덕세계"(KrV A808=B836)와 같은 내용을 제공한다. 또한 최고선은 도덕적 의무를 정치·사회·역사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칸트의 최고선 개념에는 초험적 측면과 내재적 측면이 존재하는데, 전자가 후자를 가능하게 하거나 근거 짓는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초험적 의미의 최고선을 통해 우리는 경험세계가 덕과 행복의 비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희망할 수 있다.

* 서울대 철학과 박사과정

Ⅰ. 들어가는 말

칸트의 실천철학에서 최고선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관련하여, 최고선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최고선이 칸트의 도덕철학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후자는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가를 수 있다. 각각은 내재적 의미의 최고선, 세속적secular 의미의 최고선, 초험적·신학적 의미의 최고선을 긍정하는 입장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 우리는 1960년대에서 2007년까지의 칸트의 최고선 이론에 대한 연구 동향을 네 개의 흐름으로 포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1] 각 흐름들은 칸트 윤리학의 어떤 지점을 겨냥하고 있는가에 따라 변별되는데, 우리는 이 흐름들이 칸트 윤리학의 어떤 지점과 대결하고 있는지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칸트 윤리학의 현대적 의의를 밝히려 한다.

---

1) 국내 연구 중 최고선 이론의 현대적 논의들을 소개하고 있는 논문으로 박필배의 「칸트 최고선 이론의 현대적 논의」(『칸트연구』 제10권, 2004)가 있다. 박필배의 논문은 "칸트의 최고선 이론을 윤리학의 내적인 맥락에서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예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 이성 체계의 완성이라는 칸트의 절대적 과제 속에서 최고선이 지닌 의미를 드러내 보이는"(칸트연구』 제10권, 2004, p.104)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필배는 "최고선의 역할을 칸트 윤리학의 내재적 맥락에서"(같은 곳, p.131)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박필배가 논의의 필요에 따라 몇몇 연구자들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1960년대에서 2007년까지의 연구 동향을 네 개의 흐름으로 잡아 자세히 검토하려 한다.

Ⅱ. 칸트의 최고선 이론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1. 최고선의 실천적 함의를 부정하는 관점

『실천이성비판』에서 칸트는 최고선을 “순수실천이성의 필수적[필연적] 객관”(KpV O215=V119)[2]이라고 규정했으나, 최고선의 실천철학적 중요성을 부정하는 연구자들은 이러한 칸트의 주장을 거부한다. 첫째로 최고선은 의지를 규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자율적인 의지는 스스로 법칙을 세우는 것이므로, 특정한 대상을 향한 욕구에 의해 규정될 수 없다. 만약 최고선이라는 ‘질료’가 의지를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면, 이는 의지의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둘째로 최고선은 도덕법칙이 제시하는 의무 이상의 것을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최고선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셋째로 “최고선을 촉진하라”는 의무는 실현불가능하며 따라서 존재할 수 없다. 어떤 것이 의무라면 그것은 수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최고선은 신적인 행위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것이자 예지적 세계에서 가능한 사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수행 불가능한 의무이며, 그러한 의무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있는 연구자들은 최고선이 칸트 도덕철학에 부차적이며, 자율 및 형식주의와 같은

2) 이하 칸트의 원전을 인용함에 있어,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약호: KrV)는 초판(1781)을 A로, 재판(1787)을 B로 표시하고 이어 면 수를 제시한다. 또한 『실천이성비판*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약호: KpV)의 경우 초판(1788)은 O(Original ausgabe)로, 베를린 학술원판Akademie-Ausgabe은 이 책이 수록되어있는 5권을 지시하는 V로 표시하고 이어 면 수를 제시하되, 부호 “=”를 사이에 두어 양자를 병기한다.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칸트 원저와 우리말 제목 및 약호는 본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을 참조하라.

칸트 윤리학의 특징들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을 잘 드러내는 이는 벡Beck, Lewis White[3]이다. 최고선은 도덕성과 행복을 결합한 것이므로, 최고선을 의욕할 때 의지는 자신 외의 다른 것과도 관계하게 된다. 따라서 벡은 최고선이 도덕적 의지를 규정하는 근거일 수 없다고 본다. 칸트의 실천철학에서 의지의 규정근거는 질료적 차원일 수 없기 때문이다. 최고선에 대한 희망이 의무를 행하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의지의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칸트는 순수의지의 필연적[필수적] 대상과 의지의 규정근거를 서로 구분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반박한다. 최고선이 순수의지의 규정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최고선의 개념 속에 최상**조건**으로서 도덕법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KpV O198이하=V110) 최고선은 도덕성을 조건으로 하여 행복이 부가적으로 덧붙여진 것이다. 따라서 최고선은 도덕법과 분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도덕법과 분리된 대상으로 간주할 경우, 최고선은 의지의 규정근거일 수 없다. 그러나 최고선이 도덕법의 형식을 조건으로 하여 실현되는 대상임을 고려한다면, 최고선은 의지의 규정근거일 수 있다. 최고선은 의지의 형식인 도덕법에 의해 명령된 의지의 내용이다. 목적 자체는 의지의 규정근거가 될 수 없지만, 도덕법의 형식으로 연접된다면, 객관적 목적들은 의지를 규정하는 근거일 수 있다. 만약 칸트의 추론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최고선을 **순수실천이성**의 필수적 대상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만약 **실천이성**의 필수적 대상으로 간주했다면, 이 개념은 논란 없이 이해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칸트는 “법칙에 따라서 채택되는 준칙의 근거” 혹은 “의지규정에 앞서는 표상”으로서 목적과 “결과로서 목적”을 구별함으로써 (Rel BA VI), 최고선이 타율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의지를 규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칸트는 의지규정과 관련하여 준칙의 근거

---

3) Beck, Lewis W.,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Reprinte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p.242~5.

로서 목적은 부정하지만, 결과로서 일어나는 목적은 긍정하고 있다. 만약 결과로 일어나는 목적finis in consequentiam veniens(Rel BA Ⅶ)이 없다면, 의지가 가지고 있거나 가져야만 하는 규정된 대상을 생각할 수 없다. 최고선은 준칙의 근거로서 의지 규정에 앞서는 표상이 아니라, 결과로 일어나는 목적을 뜻한다.

칸트에 따르면 이성은 본성상 "목적을 추구하고"(KrV A797=B825) "자기 자신에게 목적을 세우는"(GMS B82=IV437) 이른바 자기 목적성을 가진다. 나아가 인간은 행위의 주관적 차원뿐만 아니라 객관적 차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Rel BA VIII) 단지 주관적 차원에서 의무로부터 행동한 경우에도, 인간은 자신의 도덕적 행위가 객관적인 세계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이 때 "도덕적으로 규정된 의지의 필연적인 최고 목적"(KpV O207=V115)인 최고선은 도덕적 존재자가 욕구할만한 대상일 수 있다.

이처럼 목적에 대한 자연적인 욕구로 인해 이성은 도덕적 의지의 절대적 원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선의지의 총체적 대상"인 최고선을 규정하게 된다. 정언명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며, 최고선을 촉진하라는 정언명령(KpV O225=V125)은 부가적으로 도덕적 행위의 최종 산물로 무엇이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도덕법에 대한 존경만으로 도덕법을 따를 수 있지만, 최고선은 "순수실천이성의 총체적 객관"(KpV V108= O194)으로서 생애 및 역사 전반에 걸쳐 우리의 도덕적 행위를 지탱하는 것이다.

벡Lewis W. Beck은 최고선을 추구하라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칸트는 명시적으로 최고선을 추구하는 것이 의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KpV O225=V125) 최고선을 추구하라는 것이 의무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칸트의 텍스트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논쟁은 아니다. 벡에 따르면, 어떤 것이 의무라면 그것은 도덕법칙의 형식에서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최고선을 추구하라는 의무는 법칙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최고선을 촉진하라는 의무가 있다는 칸트의 주장은 도덕법의 명령과

분리된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령 우리가 정언명령으로부터 최고선을 촉진하라는 의무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이 명령은 도덕성과 행복을 결합한 것인 최고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도덕성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즉 최고선을 촉진하라는 정언명령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해도, 이 명령은 도덕성의 개념만을 포함할 뿐 행복의 개념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벡은 최고선을 촉진하라는 의무가 존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우리는 정언 명령이 이미 의무의 대상과 관련하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언명령의 정식에는 의무의 대상이 제시되어 있다.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GMS B67=Ⅳ429) 이 정식은 '인간(성)'이라는 의무의 대상을 참조하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벡은 정언명령의 조항 중에 최고선을 실현하라는 것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최고선을 실현하라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도덕법칙이 최고선을 촉진을 명령한다는 칸트의 주장(KpV O256=V142)은, 어떤 정언명령의 정식에서도 최고선의 촉진을 명령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벡의 주장은 정언명령의 세 번째 정식인 '목적들의 나라의 정식'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목적들의 나라'의 정식은 "모든 준칙은 자신의 법칙 수립에 의해 자연의 나라로서의 목적들이 가능한 나라와 조화로워야 한다."(GMS B80=IV436)로 표현된다. 이러한 정언명령의 정식은 최고선에 대한 다양한 규정 중 하나인 "도덕세계"(KrV A808=B836)를 포함하고 있다.[4] 목적들의 나라란, 이념적으로 도덕적 주체들이 지닌 주관적 목

4) 위케Wike, Victoria S.와 젤딘 Zeldin, Mary-Barbara,은 목적들의 나라와 도덕세계가 서로 교환 가능한 개념이라고 파악한다. Victoria S. Wike, *Kant on Happiness in Ethic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 Mary-Barbara Zeldin, "The Summum Bonum, the

적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세계이다. 목적들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은 입법자인 동시에 자신이 입법한 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곳에서는 누구든 도덕법칙을 따를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성적 의지에 어긋난 규칙을 부여받지도 않는다. 그 결과 모든 구성원은 도덕법칙 아래에서 평등한 관계를 가지며,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

따라서 목적들의 나라는 『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에 제시된 "도덕세계", 즉 모든 것이 윤리적 법칙에 합치해 있는 그러한 세계(KrV A808= B836; KpV O207=V115)에 상응한다. 칸트는 도덕 세계를 "도덕성과 그에 부합되는 행복이 비례하게끔 결합된 체계ein solches System der mit der Moralität verbundenen proportionierten Glückseligkeit"(KrV A809=B837), "자체적으로 보답을 받는 도덕성의 체계 System der sich selbst lohnenden Moralität"(KrV A809=B837)로 규정한다. "도덕 세계"란 모든 사람이 도덕법에 의거하여 행위한다고 가정된 세계이며,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 존재 가능하고, 도덕법칙의 관점에서 보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세계이다.(KrV A808=B836) 도덕세계는 하나의 실천적 이념이며,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요구한다. 목적들의 나라와 도덕세계에서의 행복은 도덕적인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의 특수한 목적들과 양립될 수 있는 보편적인 행복이 가능할 수 있다면, 그 행복은 도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도덕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충족됨으로써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된 상태이다.

문성학[5] 또한 칸트의 최고선이 도덕법칙의 형식성을 훼손한다고 본다. 칸트에게 최고선이 "의지의 필수적[필연적] 객관"으로 간주되는 한, 최고선의 구성요소인 행복 또한 행위의 객관 혹은 목적으로 추구

Moral Law, and the Existence of God". *Kant-Studien 62*, 1971.

5) 문성학, 「칸트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 『철학논총』제28집, 2002, pp.229~50.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성학은 정언명령 자체가 완벽하게 형식주의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최고선이라는 실질적 요소가 도덕법에 개입된 것을 불가피한 결과로 파악한다. 문성학은 정언명령의 비형식적 측면을 지적하기 위해, 『윤리형이상학 정초』에 제시된 정언명령의 정식 중 '목적의 정식', 곧 "이성적 존재자는, 그것의 본성상 목적으로서, 그러니까 목적 그 자체로서 모든 준칙에 대해 모든 한낱 상대적이고 자의적인 목적들을 제한하는 조건이 되어야만 한다."를 예로 든다. 문성학에 따르면 이 정식은 정언명령의 질료를 나타내며, 실질적인 것이다. 정언명령 자체가 이미 질료의 차원을 가진다는 점에서, 칸트 윤리학에 최고선이라는 실질적인 요소가 도입된 것은 정언명령 자체가 완벽히 형식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귀결이다.

그러나 '목적 자체로서 인간(성)' 및 '최고선'이라는 대상은 여타의 질료적 대상과 다른 특수한 위상을 가진다.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GMS B66 이하=IV429)에서 언급된 인간(성), 즉 수단이 아닌 목적을 뜻하는 인간(성)은 현상적 의미의 인간(성)이 아니라 예지적 의미의 인간(성)을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의 인간(성)은 도덕법의 형식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칸트는 정언명령이 지닌 "행위 일반의 보편적 합법칙성"(GMS B17=IV402)을 "나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어야만 할 것을 내가 의욕할 수 있도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칸트의 정언명령은 보편화되기 위해 상상적 일체의 과정을 요구한다. 이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지 상상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 때 준칙의 보편화를 의욕하는 '나'는 보편적일 수 있는 존재로서, 현상적인 '나'가 아닌 예지적인 '나'를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의 인간(성)은 자연적 욕구 및 사회적·역사적 전통을 넘어선 순수한 실천이성으로 구성된 도덕적 존재를 가리킨다. 그 결과 목적으로서 인간(성), 예지적인 '나'는 정언명령의 "보편적 합법칙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윤리형이상학 정초』 2장에 제시된 정언명령의 공식들은 이성적 행위자라는 개념을 분석하여 도출된 것이다. 정언명령의 공식 중 "목적의 정식"은, 행위자가 어떤 목적이나 대상 없이 행위할 수는 없다는 가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때 목적은 어떤 경향성에 의해 세워진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완벽하게 이성적인 행위자가 염두에 두는 목적은 목적 그 자체인 것, 무조건적인 목적이다. 칸트는 이러한 목적이 이성적 존재자 자체 혹은 우리가 '인간성'이라는 형식으로 인식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목적의 무조건적인 가치가 정언명령에 따르는 것을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어준다.

칸트 또한 모든 행위의 근거에 '목적의 정식'이 있어야만 '보편화의 정식'이 가능하며, 두 정식이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파악한다. 왜냐하면 나의 준칙을 모든 주관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조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목적의 주체 즉 이성적 존재자를 '모든 수단의 사용을 제한하는 최상의 조건'으로서 모든 준칙에 전제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GMS B70～1＝IV431～2) 즉 도덕이 목적 그 자체라면, 그것의 담지자로서 인간도 목적 그 자체여야만 한다. 정리하자면 '목적으로서 인간(성)'은 질료이긴 하지만 도덕법의 형식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준칙에 대해 일체의 한낱 상대적이고 자의적인 목적들을 제한하는 조건"(GMS B80＝IV436)이며, 도덕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성학은 『칸트 윤리학과 형식주의』(경북대학교출판부, 2007)에서 목적 자체로서 인간 즉 예지체로 파악된 인간은 형식주의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문성학에게 이러한 의미의 인간은 단지 "순수 사유"일 뿐이며, 경향성의 유혹이나 도덕적 갈등에 빠지지 않는 존재이다. 문성학은 이와 같은 인간을 윤리학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본다. 인간이 도덕의 문제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자연적 존재인 동시에 예지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성학이 보기에 인간에게서 도덕성을 담지한 예지적 부

분만 목적 그 자체로 간주하고, 경험적이고 신체적인 부분을 도외시하는 것은 “작위적인 이분법”일 뿐이다.

물론 칸트 또한 도덕법칙이 인간에게 ‘명령’으로 경험되는 까닭을 인간이 가진 예지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 사이의 괴리에서 찾는다. 윤리학이 가능한 것은, 인간이 경향성과 도덕법 모두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트가 인간을 목적 자체로 대우하라고 말할 때, 이는 “살과 뼈를 가진” 인간의 경험적 측면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인간이 감성적·경험적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 그 자체**인 것처럼**als ob 대해야 한다는 것, 즉 도덕법칙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유한한 존재인 인간으로서 우리가 동일한 유한성의 존재인 다른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려면, 우리는 준칙을 채택하고 목적을 추구하는 능력을 서로 보완해야만 한다. 정언명령의 정식들 중 “목적들의 나라”의 정식은 다른 모든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원리에 따라 행위하려 노력하는 사람의 관점과, 다른 모든 사람의 행위 능력을 존중하는 원리에 따라 행위하려 노력하는 사람의 관점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파악될 수 있다. ‘목적들의 나라’에서 각각의 행위자는 법칙을 세우는 동시에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이 자율적 존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덕적 지위를 충분히 고려하는 행위 양식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Ⅱ. 최고선의 실천적 함의를 긍정하는 관점들

1. 내재적 의미의 최고선

최고선이 칸트의 실천철학에 필요하다고 보는 연구가들 중 실버Silber, John R.와 패커Packer, Mark 등은 최고선이 의무에 질료적인 내용을 부여함으로써 의무의 영역을 확장하고, 도덕법칙의 구체적인

적용에 기여한다고 본다. 이 입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연구자는 실버 Silber, John R.이다. 실버는 최고선에 대한 규정들에서, 감성 세계를 초월하는 무제약적 목적의 측면과 인간의 현실적인 도덕적 의무와 관련된 차원을 구분한다. 각각은 내재적immanent 의미의 최고선과 초험적transcendent 의미의 최고선을 가리킨다.

칸트는 최고선과 관련하여 인간의 의무를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한다. 칸트는 한편으로 최고선을 완전히 실현하는 의무가 있다고 언급한다. 다른 한편으로 칸트는 자신의 힘이 닿는 한 최고선을 촉진하는 것이 의무라고 언급한다.(KpV O203=V113,O220=V122, O227=V126; Rel BA 4~5) 전자는 이성의 이념으로서 최고선의 초험적 측면이며, 후자는 의지의 객관으로서 최고선의 내재적 측면이다. 칸트의 최고선 규정에는 초험적인 측면과 내재적인 측면이 존재한다.[6] 전자는 감성세계를 초월하는 무제약적 목적의 측면이며, 후자는 인간의 현실적인 도덕적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재적 목적의 측면이다. 초험적 의미의 최고선은 최고선을 '(완전히) 실현'하라는 명령으로, "도덕세계" 및 "하느님의 나라"와 같은 예지적 세계로 제시된다. 이는 이성의 이념으로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며, 선의 규범적normative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반면 내재적 의미의 최고선은 최고선을 '촉진' 혹은 '추구'하라는 의무로 제시되며, 도덕적 공동체의 건설과 같은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의 노력으로 나타난다.

칸트는 이 두 가지를 체계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또한 어떻게 최고선이 감성세계에서 인간의 힘으로 실현 불가능한 동시에 인간의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인간의 의무가 초험적 혹은 내재적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성의 초월적 이념인 최고선이 동시에 도덕적 의지의 내재적 객관일 수 있을까?

자유는 의무의 구성적인 요소이고, 자유의 인식근거인 도덕법은 의

---

6) John R. Silber, "Kant's Conception of the Highest Good as Immanent and Transcendent". *Philosophical Review 68*, 1959, pp.228~36.

무의 구성적 혹은 규제적 요소이다. 실버Silber, John R.은 의무를 규제적 의무와 구성적 의무로 구분한다.[7] 의무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실제적인 도덕적 성격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제공할 때, 그 의무는 구성적이다. 한편 의무가 의지로 하여금 자유의 범위를 측정하도록 하는 표준을 제공할 때, 그 의무는 규제적이다. 규제적 의무와 구성적 의무라는 구별을 통해 우리는 최고선의 의무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의무가 최고선을 완전히 실현하라는 명령으로 제시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명령은 인간의 유한하고 제한된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의지가 의무에 '구성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고선의 총체적 실현이 구성적으로가 아니라 규제적으로 의지에 관련된다면, 초험적 측면에서 최고선은 의지의 불가능한 객관이 아니다. 최고선의 완벽한 실현이라는 생각을, 의지가 행위의 규제적 원리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최고선의 초험적 이념을 규제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최고선과 도덕법을 실천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바꿔 말해, 우리는 최고선을 완전히 실현하라는 규제적 의무를 참고함으로써 비로소 최고선을 추구하라는 구성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고선의 초험성 때문에, 규제적 의무는 의지의 힘을 넘어서는 의무를 의지에 부여한다. 그 결과 의지는 자신의 구성적 의무의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최고선이라는 초월적 이념 또한 도덕적 의지의 필연적(필수적) 객관이 된다. 이 때 의지는 이러한 객관을 규제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 입장에 있는 연구자들은 최고선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부여 요소라는 점에서 최고선의 실천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패커Packer, Mark와 스티븐 스미스Steven G. Smith는 최고선을 통해 우리가 도덕적으

---

7) Silber, John R., "Kant's Conception of the Highest Good as Immanent and Transcendent", *the Philosophical Review* vol.68 no.4, 1959, pp.496~9.

로 행동할 동기를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8] 칸트는 실천적 이념에서 윤리성과 행복이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며, 행복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열망이 도덕적으로 행위할 동기를 부여한다고 본다.(KrV A813=B844) 칸트에게 우리가 덕 즉 "행복할만한 자격있음"에 비례하여 행복해야 한다는 것은 이성의 요구이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연구자들은 칸트의 형식주의만으로는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언명령 혹은 윤리적 형식주의에 대한 헤겔의 비판과 닿아있다. 칸트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마땅히 그러해야 할 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윤리학의 목표로 삼아, 내용의 측면이 아닌 순수한 형식의 측면에서 규범의 보편성을 확보하려 했다. 헤겔은 이러한 칸트의 형식주의를 비판하면서, 정언명령을 통해서는 의무에 대한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규정 이상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의무라는 추상적 개념은, 특수하고 구체적인 현실적 상황에서 행동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 "의무가 도덕적 자기의식 속에서 바로 이 의식의 본질이며 보편적인 것인 한, 또한 이 자기 의식이 자기 내면에서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는 것인 한, 의무 그 자체는 추상적인 보편성만이 남을 뿐이다. 그 결과 이 의무는 무내용적 동일성, 무규정자를 자신의 규정으로 삼게 된다."(GpR §135)

헤겔의 비판에 따르면, 칸트의 도덕법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하고 형식적인 확신"(GpR §137)에 근거한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보편성을 가진다. 바꿔 말해 칸트의 윤리학은 선의 실질적 내용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선은 "세계 안에 있는 보편적인 것"과의 연관성을 확보하여, 도덕법의 공허함을 지양한다. 헤겔에게 칸트의 최고선은 도덕성과 행복의 통일이라는 점

---

8) Mark Packer, "the Highest good in Kant's Psychology of Motivation", *Idealistic Studies 63*, 1983, pp.110~9. ; Steven Smith, "Worthiness to be Happy and Kant's Concept of the Highest Good", *Kant-Studien 75*, 1984, pp.168~180.

에서 보편과 특수, 즉 보편적 이성의 요구에 의한 도덕적 규칙과 행복이라는 특수의 통일을 가리킨다.

이처럼 도덕법칙이 순전히 형식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구체적인 의무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정언명령의 형식적 측면을 나타내는 보편화의 정식[9]은, 단지 주어진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행위의 보편적 원리를 정식화해야 한다는 정도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행위자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법칙이 되어야만 한다고 의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것은 행위자가 채택하는 원리의 일반적인 기준, 예측 가능한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요구한다. 바꿔 말해 이것은 어떤 준칙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서 보편화 가능한 것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거부되어야 하는지 가려내는 절차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칸트의 도덕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행위를 도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칸트가 제시한 원리들이 추상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단 칸트는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때 판단과 심사숙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원리들은 (계산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강제를 부과하는 것이며, 우리의 결정을 (구체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할 수 있을 뿐이다.[10]

칸트 윤리학의 힘은 이러한 형식적 무규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 주체는 도덕법칙 자체로부터, 특수한 상황에서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규범을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 이것은 주체 자신이 도덕법의 추

---

9) "준칙들은 마치 그것들이 보편적 자연법칙들같이 타당해야 하는 것처럼 선택되어야 한다."(GMS B80=IV436)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GMS B52=IV421)
"마치 너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GMS B52=IV421)

10) O'neil, Onora, "Kant on Reason and Religion",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editied by G.B.Peterson)*, Salt Lake City: University Utah Press, 1997, pp.272~4.

상적 명령을 일련의 구체적 의무로 변환해야 할 책임을 가짐을 의미한다. 윤리적 주체는 자신이 따를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규범에 책임을 진다. 우리는 인간의 인격이 지닌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칸트 윤리학의 실천적 함의를 발견한다. 칸트의 윤리학에서 개별 인격들은 스스로 행복을 창출하고, 도덕법칙에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떠맡는 존재자이다. 이것이 오늘날 만연해있는 공리주의와 칸트 윤리학의 변별지점이다. 자연과학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행위가 양화가능하고 계산을 통해 결정・예측될 수 있다는 사고가 확산됨에 따라, 공리주의 또한 확산되었다. 인간의 행위 및 감정을 양화가능한 것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는 인격을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공리주의에서 인격은 도덕성의 객체가 아니라 쾌락을 지닌 자로 파악된다. 반면 칸트의 윤리학에서 도덕성의 객체는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형성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정당하게 지는 행위자이다.[11] 공리주의의 윤리적 요구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칸트 윤리학의 요구는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책임 있게 만들라는 것에 있다.

2. 세속적 의미의 최고선

다른 입장에 있는 연구자들은 의무의 사회・정치・역사적 측면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최고선을 긍정한다. 이들은 『판단력 비판』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윤리형이상학』에 제시된 최고선 규정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내재적 최고선과 초험적 최고선이라는 실버의 구분을 받아들이되, 내재적인 최고선 개념을 확장시킨다. 이들은 칸트의 최고선 규정에 담겨있는 초험적이고 신학적인 측면들, 예를 들면 덕과 행복의 '비례적' 결합, 신의 현존과 영혼불멸의 요청 등을 제거하여 최고선 개념을 세속화secular시킨다.

"세속적 의미의 최고선"을 옹호하는 이러한 입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연구자는 요벨Yovel, Yirmayahu과 리스Reath, Andrew이다. 요

11) 프리도 릭켄, 김용해 역, 『일반 윤리학』,서광사, 2006, pp.388~9.

벨[12]은 『실천이성비판』에 제시된 “한 개인에 대한 최고선”과 “가능한 세계의 최고선”(KpV O199=V110이하) 즉 ‘개인적 최고선’과 ‘사회적 최고선’의 구분을 받아들이고, 최고선은 개인적이고 내적인 도덕성의 영역과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도덕성의 영역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스[13] 또한 요벨의 주장을 긍정하면서, 최고선을 ‘내재적-초험적’이라는 틀로 조망한 실버의 관점을 받아들이되, 이를 ‘세속적-신학적’이라는 틀로 변형시킨다.

이러한 주장은 『판단력 비판』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등에서 최고선이 예지적 세계 혹은 내세가 아닌 ‘이’ 세계에서 가능한 것으로, 인간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윤리적 공동체”(Rel A128=B136), “보편적 교회”(Rel A174=B184), “덕의 법칙에 따르는 보편적 공화국”(Rel A128=B136) 등과 같은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최고선은 인간 행위자에 의해 실현되어야 할 집합적이고 사회적이며 제도적인 목적으로 제시된다.

한편 김진[14]과 캐스웰Caswell, Matthew[15]은 도덕적 ‘진보’의 문제와 관련하여 최고선을 고찰한다. 김진에 따르면, 최고선은 도덕적 주체가 추구하는 최상 목표이자 도덕적 실천의 최고 목표이다. 캐스웰은 인류의 도덕적 진보를 보증하는 최고선이 없다면 근본악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고선이 윤리학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본악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 선함은 윤리적 실천Sitten을 통한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심정의 “전도”(Rel B54)를 필요로 한다. 즉 도덕적 선함은 사고방식 및 성격의 기반 자체를 변혁시키는

---

12) Yirmayahu Yovel, *Kant and the Philosophy of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p.36~42.

13) Andew Reath, “Two Conceptions of the Highest Good in Kant”.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6*, 1988, pp.600~13.

14) 김진, 『칸트와 요청주의』,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

15) Matthew Caswell, “Kant′s Conception of the Highest Good, the Gesinnung, and the Theory of Radical Evil”, *Kant-Studien 97*, 2006, pp.202~9.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선한 마음씨가 의욕하는 목적이 바로 최고선이다. 즉 최고선은 우리가 윤리적인 심정의 변화Herzensänderung를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대상이다. 한편 김진은 칸트의 요청이론을 최고선의 실현 가능성과 연결하여 검토함으로써, 최고선을 추구하라는 의무가 현상 세계를 도덕적으로 더 나은 세계로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라고 파악한다.[16] 만약 우리가 최고선의 현실적 가능성을 요청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들의 현실적 가능성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 조건들이 영혼의 불멸성, 자유 그리고 신의 현존의 요청이다.(KpV O238=V132)

니만Neiman, Susan[17] 또한 칸트의 최고선이 개인적인 차원의 윤리적 실천을 넘어서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윤리적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최고선에 대한 요구, 즉 도덕성과 행복의 비례적인 결합에 대한 이성의 요구는 세계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에 대해 해야 할 요구이다. 니만은 최고선을 통해 우리는 도덕성과 행복의 결합을 세계 안에서 추구해야 한다는 의무를 깨닫게 되며,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윤리적 실천을 통해 이 세계를 변혁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규제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세계가 도덕적 이성이 제시하는 요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희망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다. 감성적인 동시에 이성적인 존재자인 우리가 이성의 요구에 따라 이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희망은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

앞서 "내재적 의미의 최고선"을 옹호한 이들이 최고선을 윤리적 '형식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해결책으로 간주했다면, "세속적 의미의 최고선"을 옹호하는 이들은 칸트의 실천 철학이 도덕법의 형식적 우선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객관 및 질료를 고려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흔히 칸트의 윤리학은 목적이나 욕구와 관련되지 않은 '의무를

16) 김진, 『최고선과 요청주의』,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
17) Susan Neiman, *the Unity of Reason: Rereding Ka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p.179~181.

위한 의무'만을 도덕적 행동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처럼 형식으로 규정된 도덕법칙이 행위의 객관 혹은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반대하여, 리스Reath, Andrew[18]는 칸트의 도덕철학이 행위의 객관을 도외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리스에 따르면, 자기 자신만을 대상으로 삼는 선의지만이 유일한 도덕적 선이라고 해서 칸트의 윤리학이 행위의 객관이나 목적을 도외시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견해는 칸트가 제시한 덕 의무의 중요성, 특히 다른 사람의 행복을 촉진하라는 덕 의무(MS A16이하)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칸트는 도덕법에 부합하여 행해진 행위가 선 자체이고, 도덕법에 따르는 준칙을 가진 의지만이 '단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선하다고 쓰고 있다. 이것은 어떤 행위가 정언명령에 따라 일어날 때, 그 행위의 목적 또한 도덕적으로 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객관 혹은 목적의 선함이 그것을 산출하는 준칙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지, 행위의 객관 혹은 목적의 선함 자체를 도외시한 것이 아니다.

리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칸트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을 가진다. 『판단력비판』에서 칸트는 선[좋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선[좋음]이란 이성을 매개로 해서 순전한 개념에 의하여 만족을 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수단으로서만 만족을 주는 것을 무엇을 위하여 선하다[좋다](유용한 것)고 하고, 그 자체만으로서 만족을 주는 것을 그 자체에 있어서 선하다고 부른다. 이 양자에는 언제나 목적의 개념이, 즉 이성과 적어도 가능한 의욕과의 관계가, 따라서 어떤 객체 또는 어떤 행위의 현존에 관한 만족, 즉 어떤 관심이 내포되어 있다."(KU B10이하) 즉 칸트에게 선이란 대상에 대한 관심, 목적하고 있는 결과에 대한 관심을 전제한다. 목적 관계 자체가 의지의 규정근거는 아니지만, 그러한 결과 없이는 의도된 행위에 대한 대상을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칸트는 실천적 의미의 완전성이 어떤 규정

18) Andrew Reath, "Two Conceptions of the Highest Good in Kant".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6*, 1988, pp.614~5.

된 목적을 충족시키거나 그 목적을 부합하는 데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천적 의미에서 완전성 개념은 사물의 모든 목적에서 유용함 내지 충분함을 의미한다. […] 그러므로 무릇 목적들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야만 하고, 이것들과 관련해서 완전성 개념이 의지의 규정 근거가 될 수 있다.”(KpV O72=V42) 즉 목적에 대한 참조가 없다면 개념은 내용을 결여할 것이다

3. 초험적 의미의 최고선

세속적 의미의 최고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최고선이 가진 초험적이고 신학적인 특성을 거부하거나 축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만약 최고선이 가진 신학적 특성을 거부한다면, 이는 칸트가 최고선을 도덕에서 이성종교로 이행하는 것을 보증하는 개념으로 사용했음을 간과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비판하면서 몇몇 연구자들은 최고선을 세속화하는 해석에 반대한다. 이들은 최고선을 주제화하여 다룬 칸트의 저술들 외에 다른 저술들(『윤리형이상학 정초』, 『실천이성비판』의 분석론, 『윤리형이상학』)까지 고려하여, 초험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의 최고선을 긍정한다.

젤딘Zeldin, Mary-Barbara은 최고선 개념이 칸트 윤리학에서 돌출된 개념이 아니라 다른 저작과 유기적으로 연결 가능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19] 최고선, 특히 “최고의 파생적 선” 혹은 “도덕세계”는 『윤리형이상학 정초』의 정언명령의 세 번째 정식에 제시된 ‘목적들의 나라’(GMS B74=IV433)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한편 프리드만Friedman, R.Z. 또한 칸트의 최고선을 초험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한다.[20] 최고선은 도덕성과 이에 비례하는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

19) Mary-Barbara Zeldin, “The Summum Bonum, the Moral Law, and the Existence of God”. *Kant-Studien 62*, 1971, pp.43~54.

20) Friedmann, R. Z., “The Importance and Function of Kant's Highest Good”.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2*, 1984, pp.337~41.

신의 현존을 요청한다. 신의 현존과 관련해 볼 때, 최고선의 부정은 곧 신의 현존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며, 인간의 도덕적 명령 및 신념을 약하게 만든다. 프리드만은 덕과 이에 비례하는 행복의 결합이 이루어진 세계가 이성의 구축물이며 세계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지만,[21] 그렇다고 해서 최고선 개념이 실천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 않는다. 최고선은 자연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의 통일을 나타내며, 자연에 대한 도덕법의 우선성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도덕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에 대한 도덕법의 우선성을 보존하면서 자연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를 통일하지 않는다면, 즉 최고선이 없다면, 도덕법은 세계와의 연결을 상실하고 개인의 의식 차원에만 입법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편 마리냐Mariña, Jaqueline는 내재적 의미의 최고선과 초험적 의미의 최고선 개념을 어느 한쪽으로 환원하지 않고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칸트의 최고선 규정에는 개인의 현존과 관련된 내세에서의 淨福Seligkeit뿐만 아니라 "도덕세계"를 실현하라는 사회적 이상도 담겨 있다. 마리냐는 초험적 의미의 최고선을 최고선의 '원리적 의미'로서 옹호한다. 경험 세계를 논할 때 예지 세계를 참조해야 하는 것처럼, 초험적 의미의 최고선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내재적 의미의 최고선을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우리는 신을 통해서 최고선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최고선을 단순히 내재적 의미로 이해한다면 왜 "이성의 관심"(KrV A805=B833)으로부터 최고선이 도출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이성의 관심을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한 뒤, 세 번째 질문인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의 대답으로써 최고선을 제시한 바 있다.

---

21) 그러나 프리드만은 젤딘과 달리 정언명령과 최고선의 관련성을 부정한다. 벡Beck, Lewis W.와 마찬가지로 프리드만 또한 정언명령에 대한 정식에서 최고선에 대한 참조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리드만은 최고선의 신학적 측면이 최고선을 실천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만들어준다고 주장한다.

최고선의 초험적 측면을 평가절하했던 연구자들(Reath: 1988, Yovel: 1980 등)은 현상계의 요소를 예지계에 직접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들은 경험적 요소가 오직 감성세계에만 의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선의 경험적 요소를 단순히 초험적·내세적인 차원으로 이동시켜 최고선 개념을 해석했다. 덕과 행복의 "구조적 상이성"에서 비롯된 최고선의 이율배반은 초험적 의미의 최고선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초험적 의미의 최고선에서 행복은 淨福Seligkeit으로, 덕은 신성성으로 대체되므로, 최고선을 구성하는 요소들(淨福과 신성성)이 모두 감각 영역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초험적 의미의 최고선을 옹호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최고선의 실천적 측면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초험적 의미의 최고선을 "희망의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감성적 세계에서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초험적 의미의 최고선은 이 세계 안에서 행위하기 위한 규제적 이념의 위상을 가진다. 이 때 초험적 의미의 최고선이 순수실천이성의 필연적 객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성 세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초험적 의미의 최고선은 경험세계가 궁극목적을 향해 목적론적으로 질서지어진 것으로 이해하도록 해준다. 즉 우리는 초험적 의미의 최고선을 통해서 최고선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초험적 최고선이라는 이상Ideal은 감성 세계 안에서 실현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이상을 매개로 이 세계의 진행이 단지 맹목적인 기계적 인과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덕과 행복의 비례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질서지어져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 희망이 우리에게 세계가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Ⅲ. 나가는 말

최고선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연구자들은 최고선이 칸트 도덕철학의 핵심 개념들, 예를 들면 도덕적 선moralische Gut과 실용적·기술적 좋음praktisches und technisches Gut의 구분, 도덕법의 형식성, 의지의 자율성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면서 칸트 실천철학에서 최고선 개념이 갖는 중요성을 짚어보았다.

최고선의 중요성을 긍정하는 연구자들은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가를 수 있다. 각각은 내재적 의미의 최고선, 세속적secular 의미의 최고선, 초험적·신학적 의미의 최고선을 긍정하는 입장을 가리킨다. 우리는 각 입장들이 칸트 윤리학의 어떤 지점에 초점을 맞춰 최고선을 긍정하는지 검토했다. 첫 번째 입장에 있는 연구자들은, 최고선이 도덕법칙이라는 형식적 명령에 "덕에 비례하는 행복", "도덕세계" (KrV A808=B836)와 같은 질료적 내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고선을 긍정한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연구자들은 칸트 윤리학이 지닌 형식주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덕법칙을 참조하는 것만으로는, 특수한 상황에서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규범을 도출할 수 없다. 최고선은 이러한 "추상적이고 공허한" 도덕법칙의 형식에 구체적인 내용을 부여하여, 칸트 윤리학의 형식주의적 한계를 극복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여 칸트 윤리학의 힘이 형식주의에 있음을 주장했다.

두 번째 입장은 최고선이 도덕적 의무를 정치·사회·역사적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최고선을 긍정한다. 최고선을 촉진하라는 의무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의 차원을 포괄하여 이성의 도덕적 요구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연구자들은 신의 현존 요청 및 영혼의 불멸성 요청과 같은 최고선의 신학적 특성들을 제거하고, 제도적이고 공동체적 차원을 부각시켜 최고선을 세

속화한다. 이러한 주장은 칸트의 저작에 나타난 최고선 규정들 중 특정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세 번째 입장에 있는 연구자들은 초험적transcent이고 신학적인 의미의 최고선이 칸트 윤리학의 전체 맥락에 부합한다고 본다. 칸트의 최고선 개념에는 초험적 측면과 내재적 측면이 모두 존재하지만, 전자가 후자를 가능하게 하거나 근거 짓는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면서, 칸트 실천철학에서 초험적 의미의 최고선이 가지는 목적론적 의의를 검토하였다. 초험적 의미의 최고선을 통해 우리는 경험세계가 덕과 행복의 비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희망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원전

Kant, Immanuel, Kritik der reinen Vernunft(1781,1787), hrsg. v. R. Schmidt, Felix Meiner Verlag, Hamburg, 1990.(약호 KrV)

____,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1785), hrsg. v. W. Weischedel, Suhrkamp Taschenbuch Verlag, 1974.(약호 GMS)

____,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1788), Felix Meiner Verlag, hrsg. Heiner F. Klemme und Horst D. Brandt, Hamburg 2003.(약호 KpV)

____,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 (1793,1794), hrsg. v. W. Weischedel, Suhrkamp Taschenbuch Verlag, 1977.(약호 Rel)

Georg W. Fr.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oder Naturrecht und Staatswissenschaft im Grundrisse, Suhrkamp Taschenbuch Verlag, 2000.(약호 GpR)

2. 원전의 번역본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순수이성비판』, 아카넷, 2006.

_____,_____, 『실천이성비판』, 아카넷, 2002.

_____,_____, 『윤리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2005.

_____, 신옥희 역,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G.W.F 헤겔, 임석진 역, 『법철학』, 지식산업사, 1996.

3. 이차문헌

김 진, 「칸트에서의 최고선과 도덕적 진보」, 『칸트 연구』제2권, 1996.

문성학, 「칸트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 『철학논총』제28집, 2002.

_____, 『칸트 윤리학과 형식주의』,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7.

박필배, 「칸트 최고선 이론의 현대적 논의」, 『칸트연구』 제10권, 2004.

프리도 릭켄, 김용해 역, 『일반 윤리학』,서광사, 2006.

Caswell, Matthew, “Kant's Conception of the Highest Good, the Gesinnung, and the Theory of Radical Evil”, *Kant-Studien 97*, 2006.

Friedmann, R. Z., “The Importance and Function of Kant's Highest Good”.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2*, 1984.

Mariña, Jacqueline, “Making Sense of Kant's Highest Good”, Kant-Studien 91, 2000.

O'neil, Onora, “Kant on Reason and Religion”,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editied by G.B.Peterson)*, Salt Lake City: University Utah Press, 1997.

Reath, Andrew, “Two Conceptions of the Highest Good in Kant”.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6*, 1988.

Silber, John R., “Kant's Conception of the Highest Good as Immanent and Transcendent”. *Philosophical Review 68*, 1959.

Wike, Victoria S., *Kant on Happiness in Ethic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Yovel, Yirmayahu, “The Highest Good and History in Kant's Thought”. *Archiv für Geschichte der Philosophie 54*, 1972.

Zeldin, Mary-Barbara, “The Summum Bonum, the Moral Law, and the Existence of God”. *Kant-Studien 62*, 1971.

ABSTRACT

Contemporary discourses on Kant's concept of the highest good

Kang, Ji-Young

Since the highest good is the combination of morality and happiness, the knotty point is a function of the heterogeneity of one of the concept's ingredients, happiness. Therefore many scholars consider the highest good as injurious to the characteristics of Kant's moral philosophy, namely, the formality of the moral law, autonomy of will. But we assert its significance to Kant's moral theory. First, the highest good gives material contents, for example "the moral world" or "ethical commonwealth", to the moral law which is determined by universal form. Second, the highest good extends our personal duty to the social / historical level. The fact that the principle meaning of the highest good is transcendent implies that we need to understand the empirical world as *teleologically* ordered towards a final goal. It has implications concerning how an agent must conceive of nature in order to pursue rationally the ends dictated by morality.

Keywords: the highest good(das höchste Gut), Kant, ethical formalism, teleology

---

원고 접수일: 2008. 01. 22 / 심사 완료일: 2008. 02. 16